



2016년 마량면 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16. 6. 29.(수) ~ 7. 1.(금) / 3일간
- 대상기간 : 2014. 9. 1. ~ 2016. 6. 30. / 2년간
- 지적사항 : 16건
 - 시정 10건, 주의 6건
 - 재정상 조치금액 : 1건, 460천 원(회수 460)



마량면 종합감사 결과

I 총 평

1. 일반행정분야

- 주민자치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여성의용소방대 등의 유관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의 주체로 나서는 효과를 거둠
- 주민대상 프로그램과 이장회의를 통해 「관광 마량면」이 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식전환에 성과 거양
- 활발한 향우회 교류 및 마량면 전·현직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정기적 모임을 갖고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토론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면정 발전에 기여 함
- 2015년 5월 23일 개장한 마량 놀토수산시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도로변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미향마량 만들기 조성에 앞장섬으로써 지역발전의 토대 마련

2. 농업분야

- 농촌지역의 빈집정비로 주거환경 향상 및 마을경관을 개선하여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농촌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건축물 관리대장을 말소 토록 지도 하였어야 함에도 다소 부족함이 있었음

3. 사회복지분야

- 다양화 되는 복지서비스 요청에 대하여 100%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개발 관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강한 주민들이 직접 복지서비스를 참여 실천하여 주민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의 제로화로 복지서비스의 발전에 기여 함.

4. 건설분야

-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발생 빈도와 피해가 증가되는 상황으로, 평상시 철저한 사전대비와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대처가 필요함에 따라 재해 응급 복구용 보관자재 상태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위험요인 발생시 신속한 조치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홀함이 있었음

5. 회계분야

- 업무 연찬 부족으로 이장 월정수당을 매월 읍면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부 지급일을 경과하여 지급함.
- 신용카드 발급대장 및 사용대장을 비치하지 않고있어 법인카드 관리가 부실하고, 지출결의서 작성 시 견적서등 원본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사본을 첨부 하였으며, 관외출장 여비 지급시 출장결과 보고서와 개인 신용카드 등 입증할만한 자료 없이 지출하는 등 회계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음

II 감사 결과

1. 처분요구 실적 : 16건

○ 시정 10건, 주의 6건

○ 재정상 조치금액 : 1건, 460천 원(회수 460)

2. 지적사항 목록

(단위 : 건, 천원)

연번	분야	건 명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 (천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부과	
계		16건	10	6	460	460		
1	일반행정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소홀	○					
2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건축물대장 미말소	○					
3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부적정		○				
4	"	행정차량 관리 부적정	○					
5	농업분야	가축방역 약품 수불관리 소홀	○					
6	"	2015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7	"	산불진화 보유장비 점검정비 소홀	○					
8	사회복지	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				
9	"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정산미비 및 관리소홀		○				
10	건설분야	청사 정비공사 추진 소홀	○					
11	"	재해응급복구 자재관리 등 재난사전대비 미비	○					
12	"	○○,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과다집행	○		460	460		
13	회계분야	관외출장 여비지급 증빙자료 누락		○				
14	"	법인신용카드 관리 소홀	○					
15	"	이장수당 지급 업무 소홀		○				
16	"	예산집행 과목 적용 부적정		○				

VI 지적사항 요약

1.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소홀

- 개별 행정시스템(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행정오류 사전방지 및 행정업무 효율화 지원을 위해 모니터링 실시 후 처리하여야 하나 소홀히 함.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빈집) 건축물대장 미 말소

- 농촌지역의 빈집정비로 주거환경 향상 및 마을경관을 개선하여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사업 완료 후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관리대장을 말소토록 지도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3.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부적정

- 강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운영)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조례 제14조(보고)1항1) 및 제2항2)의 규정과 제21조 1항3)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행정차량 관리 부적정

- 강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부품구입 및 수리결과를 새올 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입력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음.

- 1) 동조례 제14조(보고)1항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장은 동 조례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
- 3)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고 규정

5. 가축방역 약품 수불관리 소홀

- 구제역 등 가축질병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가축방역 약품을 신속하게 배부 공급하여 가축질병 사전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약품을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확인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 방역업무에 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축방역약품 수불관리에 내부결재를 하는 등 배부에 철저를 다하였지만 축산농가 수령증을 취합하지 못하는 등 가축방역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6. 2015년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2015년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신청과 심의회 개최 등 적극 업무추진을 다하였지만 맞춤형 농기계 지원농가에 대한 농기계 지원대장 관리와 점검 등 사후관리 업무에 소홀히 하였음.

7. 산불진화 보유 장비 점검정비 소홀

-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화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산불진화 장비 관리대장 비치와 보관창고 장비보유 현황이 정돈은 되어 있으나, 일부 진화 장비에 대한 점검정비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8. 의사 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소홀

- 의사 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대상자로 2014년 2명, 2015년 1명, 2016년 1명을 지정하였으나, 급여점검표와 일부 영수증 사본만을 징구하고, 급여지출에 따른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않는 등 의사 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9.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정산 미비 및 관리소홀

-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집행 지침에 의하면 집행 후 분기별 정산을 하고 집행내용을 카드 결제 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나 2014~2016년에 110,718,180원을 집행 하면서 카드결제만 득하고 견적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정산하여 집행에 관한 세부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정산서류 및 관계된 모든 서류를 일괄 편철해야 하나 일건서류를 별도로 편철해 정산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10. 청사 정비공사 추진(준공검사 등) 소홀

- 청사 정비공사 추진시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의 문서를 접수 하지 않는 등 소홀하게 업무를 추진하였고, 청사 옥상에 자재 방치, 시공 틈새 마감(실리콘 마감) 미비 등 마무리 시공이 되지 않았는데도 재정 조기집행 등을 이유로 준공처리 (2016.5.31.) 후 계약금액을 집행하였으며, 감사일 현재(2016.6.30.)까지 마무리 보완 시공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1. 재해응급복구 자재관리 등 재난 사전대비 미비

-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장비) 현황판 미 정비등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장비) 관리 소홀과, 여름철 태풍 호우 등으로 피해가 우려 되는 노후(위험) 주택, 위험 지역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미비 등 자연재난 사전 대비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2. 마량면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과다 집행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현장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는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감독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지방서규정에 의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에 의하여 현지와 부합되도록 시공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3. 관외출장 여비지급 증빙자료 누락

- 관외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출장복명서 또는 증빙할 수 있는 개인신용카드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9건에 대한 증빙할 자료가 없이 여비를 지급함.

14. 법인 신용카드 관리 소홀

- 2014년부터 2016년 2월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고 회계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변경하지 않는 등 카드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15. 이장수당 지급 업무 소홀

-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실비변상)제1항에 의하면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14년 2건, '15년 7건, '16년 1건 등 총 10건에 대해 보수지급일을 경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16. 예산집행 과목 적용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준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일반운영비(수용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CJ헬로비전 TV수신료를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